

제23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1. 4. 19.

行 政 委 員 會

專門委員 金 玉 然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334호로 2021년 4월 8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4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및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혁신
교육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 시(2020.11.17.) 의결한 규약
개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제1항, 제2항 및 제15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 가. 감사 신설, 회장 도시 사무국 조항 마련, 임원 역할 명기 (제4조 임원)
- 나. 임원 임기에 대한 보완규정 마련 (제5조 임원의 임기)
- 다. 실무협의회의 세부 조항 정비 (제11조 실무협의회 등)
- 라. 경비부담 및 사용에 대한 세부 조항 정비 (제12조 경비부담)
- 마. 회계보고 및 결산 조항 정비 (제13조 회계보고 및 결산)
- 바. 운영세칙 조항 정비 (제15조 운영세칙)
- 사. 별지 서식 추가 (가입신청서 및 위임장)
- 아. 회원도시 현황 수정 (신규가입도시 반영)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2조 ~ 제158조

나. 예산조치 : 협의회 규약 변경에 따른 예산 증액은 없음

다. 협의회 규약: 별첨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가 지난 2018년 제정한 운영 규약 중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정함에 따라 운영규약 개정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우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정부 간 교류와 소통을 증진하고, 중앙(교육부) 및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2018년 3월 31일 31개(서울 16개) 기초단체 참여로 설립됨. 현재 서울 24개 자치구(중구 제외)를 비롯한 전국 61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영등포구는 최초 설립부터 참여하여 2018년 제1차 정례회에서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가결한 바 있음.
- 규약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에 회계감사를 위한 감사 1명을 추가하였고, 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을 두는 조항을 신설함.

- 안 제5조에서는 임원 임기에 대한 보완규정을 마련하였고,
 - 안 제11조에서는 회장이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등 실무협회의의 세부 조항을 정비하였고,
 - 안 제12조는 협회의의 분담금 납부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분담금의 사용 용도에 관하여 명시하였음.
- [※ 협의회 분담금: 연 500만원]
- 안 제13조는 회계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고, 감사 실시 및 결과 보고 등에 대하여 규정함.
 - 마지막 안 제15조에서는 규약 외의 운영 세칙에 대해 실무협의회를 거쳐 회장이 결정하고 협의회 보고를 하도록 개정하였음.

○ 검토 결과

- 이번에 제출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54조의 범위 내에서 개정된 것으로 협의회에 참여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협회의의 규약을 공통으로 규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정한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른 사항으로 관계 법령 내에서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53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5조(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개진,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6조(협의사항의 조정)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調整) 요청을 하면 시·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제157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56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15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